

(사)한국부패학회 정관

1996.4.5. 제정
2006.2.8. 개정
2009.12.17. 개정
2012.12.12. 개정
2014.2.2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부패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Corruption Studies)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법인은 반부패정책 및 반부패법을 등에 관련된 학문적 연구를 도모하고,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한국사회의 반부패와 청렴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부패와 정부혁신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조사, 및 평가
- (2) 공공감사 및 직무감찰 관련 제도개선 연구
- (3) 학회보 및 서적의 발행
- (4)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5) 본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내외 제 단체와의 학술교류
- (6) 부패추방에 관련된 홍보, 의식개혁운동
- (7) Cyber 반부패 신문의 발간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 자격 및 종류) 본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회원 의무와 권리)

-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윤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전항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등)

- (1) 본 회원은 탈퇴 및 제명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본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또는 징계 할 수 있다.

제 3 장 법인의 임원

제 8 조 (법인임원의 종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법인이사 : 7명(이사장 1인 포함)
- (2) 법인감사 : 2명

제 9 조 (법인임원의 임기)

- (1) 법인이사의 임기는 2년, 법인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법인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인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법인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1) 이사장은 법인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1) 이사장은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 (2) 법인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한 법인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조 (법인감사의 직무)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보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에 대하여 회의 7일전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임장으로 총회출석에 갈음할 수 있다.
-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7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법인이사회

제 18 조 (법인이사회의 기능) 법인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 (2)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기타 학회에 관한 중요사항

제 19 조 (의결정족수)

- (1) 법인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 (2) 법인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법인감사는 법인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0 조 (법인이사회의 의장)

- (1) 이사장은 법인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법인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1 조 (재산 및 회계)

(1)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취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22조 (회계기준일)

이 법인의 회계기준일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3조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4 조 (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 25 조 (정관 개정)

본 회칙은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설립시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서명
이사장	김영종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이사	전수일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이사	오필환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이사	윤은기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이사	배성호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이사	심재승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이사	이정주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제 8 장 부 칙

제 1 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부패학회 기본재산현황

(2013년 7월 3일자)

no.	품목명	수량	기타
1	책상	2	
2	의자	5	
3	회의테이블	1	
4	책장	1	
5	프린터	1	
6	학회통장	1	

한국부패학회 현재재산현황

(2013년 7월 3일자)